

## X. 근골격계 상병에 통증조절을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입원료 인정여부(12사례)

### ■ 청구내역

#### ○ 사례1(여/60세)

- 청구 상병명: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, 관절통, 발목 및 발,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 1\*1\*1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 1\*1\*14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1\*13  
관절내 침술 1\*1\*13  
부항술(자락관법) 1\*1\*1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13

#### ○ 사례2(여/57세)

- 청구 상병명: 상세불명의 등통증, 요추부, 관절통, 발목 및 발,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기타 만성질환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 1\*1\*14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1\*11  
투자법 침술 1\*1\*11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11

#### ○ 사례3(여/(여/65세)

- 청구 상병명: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, 상세불명의 위염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\*1\*4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2\*1, 1\*1\*3  
관절내 침술 1\*1\*3, 1\*2\*1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3, 1\*2\*1

#### ○ 사례4(여/63)

- 청구 상병명: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, 요추부, 급성비인두염[감기], 기침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\*1\*11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1\*3 1\*2\*7  
투자법 침술 1\*1\*3 1\*2\*7  
침전기자극술 1\*1\*3 1\*2\*7  
구술 1\*1\*3 1\*2\*7  
부항술(자락관법) 1\*1\*6, 1\*2\*2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7

#### ○ 사례5(남/56세)

- 청구 상병명: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, 척추협착, 요추부
- 주요청구내역

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 1\*1\*21  
 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2\*11 1\*1\*5  
 투자법 침술 1\*2\*11 1\*1\*5  
 침전기자극술 1\*2\*11 1\*1\*5  
 구술 1\*2\*11 1\*1\*5  
 부항술(자락관법) 1\*1\*6, 1\*2\*10  
 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11

○ 사례6(여/67세)

- 청구 상병명: 어깨의 충격증후군,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, 기타 무릎 구조물
- 주요청구내역  
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 1\*1\*7  
 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1\*4 1\*2\*3  
 투자법 침술 1\*1\*4 1\*2\*3  
 침전기자극술 1\*1\*4 1\*2\*3  
 구술(기기구술) 1\*1\*4 1\*2\*3  
 부항술(자락관법) 1\*1\*5, 1\*2\*2

○ 사례7(여/66세)

- 청구 상병명: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
- 주요청구내역  
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\*1\*42  
 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1\*31  
 척추간 침술 1\*1\*30  
 침전기자극술 1\*1\*31  
 변증기술료 1\*1\*7  
 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31

○ 사례8(여/64세)

- 청구 상병명: 경추의 염좌 및 긴장, 요추의 염좌 및 긴장
- 주요청구내역  
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 1\*1\*47  
 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2\*14, 1\*1\*38  
 척추간 침술 1\*1\*17  
 투자법 침술 1\*2\*14, 1\*1\*21  
 침전기자극술 1\*2\*31, 1\*1\*4  
 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2\*31, 1\*1\*4

○ 사례9(여/63세)

- 청구 상병명: 요추의 염좌 및 긴장,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,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
- 주요청구내역  
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 1\*1\*23  
 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1\*9, 1\*2\*7

척추간 침술 1\*1\*9, 1\*2\*7  
부항술(건식부항)-유관법 1\*1\*8, 1\*2\*5  
침전기자극술 1\*1\*9, 1\*2\*7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1\*9, 1\*2\*7

○ 사례10(여/65세)

- 청구 상병명: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 1\*1\*16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2\*10, 1\*1\*2  
투자법 침술 1\*2\*10, 1\*1\*2  
부항술(건식부항)-유관법 1\*2\*10, 1\*1\*2  
침전기자극술 1\*2\*10, 1\*1\*2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2\*10, 1\*1\*2

○ 사례11(여/58세)

- 청구 상병명: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\*1\*28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2\*13, 1\*1\*8  
투자법 침술 1\*2\*13, 1\*1\*8  
구술(간접구)-기기구술 1\*2\*13, 1\*1\*8  
부항술(자락관법) 1\*2\*4, 1\*1\*5  
부항술(건식부항)-유관법 1\*2\*9, 1\*1\*3  
침전기자극술 1\*2\*13, 1\*1\*8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2\*13, 1\*1\*8

○ 사례12(여/62세)

- 청구 상병명: 요추의 염좌 및 긴장,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
- 주요청구내역  
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\*1\*33  
경혈침술(2부위이상) 1\*2\*33, 1\*1\*1  
척추간 침술 1\*2\*33, 1\*1\*1  
구술(간접구)-기기구술 1\*2\*22, 1\*1\*1  
부항술(자락관법)(2부위이상) 1\*2\*10  
부항술(건식부항)-유관법 1\*2\*23, 1\*1\*1  
침전기자극술 1\*2\*33, 1\*1\*1  
온냉경락요법-경피적외선조사요법 1\*2\*33, 1\*1\*2

■ 심의내용 및 결과

-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 관련 [별표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“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,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” 고 명시하고 있고

- 입원료 일반원칙(고시 제2021-4호, 2021.2.1.시행)에 의하면 “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·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,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” 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12사례에 척추염좌, 무릎관절증, 등통증 등 근골격계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에 대하여, 요양기관 제출자료 등 참조하여 청구된 입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.

- 아 래 -

- 사례1(여/60세): 입원료 불인정  
 ‘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관절내 침술, 온냉경락요법 등을 시행하며 16일 입원진료(‘24.8.27.~9.11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
 [동 기관 15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211일(‘23.2.6.~’24.9.11.)]  
 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6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- 사례2(여/57세): 입원료 불인정  
 ‘상세불명의 등통증, 요추부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온냉경락요법 등을 시행하며 15일 입원진료(‘24.8.29.~9.12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
 [동 기관 10회 반복 입원, 누적 입원일수 155일(‘23.2.10.~’24.9.12.)]  
 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5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- 사례3(여/65세): 입원료 불인정  
 ‘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관절내 침술, 침전기자극술, 구미강활탕 투여 등을 시행하며 5일 입원 진료(‘24.9.10.~9.14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
 [동 기관 19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219일(‘23.1.2.~’24.9.14.)]  
 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5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- 사례4(여/63세): 입원료 불인정  
 ‘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, 요추부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12일 입원 진료(‘24.8.31.~9.11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 
 [동 기관 10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146일(‘23.1.3.~’24.9.11.)]  
 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

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2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5(남/56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22일 입원 진료(‘24.8.19.~9.9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9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190일(‘23.3.3.~’24.9.9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22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6(여/67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어깨의 충격증후군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8일 입원 진료(‘24.9.3.~9.10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11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105일(‘23.3.28.~’24.9.10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8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7(여/66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척추간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43일 입원 진료(‘24.7.30.~9.10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10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355일(‘23.1.1.~’24.9.10.)]

- 근골격계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43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8(여/64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경추의 염좌 및 긴장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척추간 침술, 투자법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48일 입원 진료(‘24.7.22.~9.7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10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354일(‘23.1.1.~’24.9.7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48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9(여/63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요추의 염좌 및 긴장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척추간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24일 입원 진료(‘24.8.22.~9.14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8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245일(‘23.1.1.~’24.9.14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

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24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10(여/65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17일 입원진료(‘24.8.28.~9.13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10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172일(‘23.3.4.~’24.9.13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7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11(여/58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투자법 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29일 입원진료(‘24.8.28.~9.25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9회 반복입원, 누적 입원일수 166일(‘23.8.23.~’24.9.25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29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○ 사례12(여/62세): 입원료 불인정

‘요추의 염좌 및 긴장’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, 척추간침술,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34일 입원 진료(‘24.8.12.~9.14.)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

[동 기관 8회 반복, 누적 입원일수 244일(‘23.1.2.~’24.9.14.)]

-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,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.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34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.

■ 참고
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[별표 1]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, 6. 입원
-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[산정지침]
- 입원료 일반원칙 [고시 제2021-4호, 2021.2.1. 시행]

[2024. 11. 14. 울산경남본부 한방 경상권역 분과위원회]

[2024. 12. 10. 중앙심사조정위원회]